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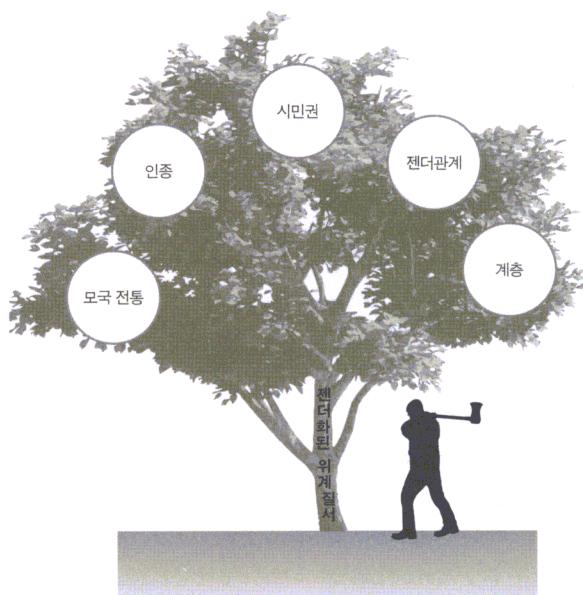
다문화주의와 여성

— 유럽의 최근 이민·사회통합 담론 및 정책의 변화와
여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

Multiculturalism and Women — Discussion on the recent
changes in th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discourses
and policies in Europe with a focus on women and culture

문경희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유럽 여성의민자의 삶의 조건 - 담론과 정책



이민국 사회통합 정책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4개국의 사례를 통해 최근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 수렴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유럽 안팎에서 무슬림 남성(이민자)에 의해 주도된 상당수 폭력 또는 테러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의 실패' 주장이 대두되었다. 무슬림 이민자의 폭력 성향을 종교, 즉 민족 문화의 문제로 간주한 이러한 문화본질주의적 관점은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을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 문화의 사례로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젠더평등, 즉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담론이 '서구와 비서구' 또는 '유럽 주류사회와 소수 이민자공동체' 간의 우열을 드러내는 논의에 차용되었다. 이는 한편에서는 위 네 국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으로 다문화주의가 부적절하다는 논의와 함께, 선별적 이민제도의 강화라는 정책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글은 각 국가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 환경 및 이념적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결과에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함께, 이 글은 이들 국가들이 이민자를 위한 반차별법 강화 및 사회적응 지원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으로 전면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위 네 국가를 포함한 유럽 내에서 전개된 다문화주의와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는 두 이념이 공통적으로 문화본질주의적 시각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결국 서구 자문화중심주의 시각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글은 최근 이민자 여성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의 교차성과 트랜스 문화성에 대해 탐색하며, 위 네 국가에서 나타난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정책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This paper looks into the recent changes in th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discourses and policies in Europe, especially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Sweden. In recent years, som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leaders in Europe have claimed multiculturalism as being failed in European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on women and culture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and also criticizes the cultural essentialist view entailed in both ideologies. Moreover, this study explores two alternative notions, 'transculturality' and 'intersectionality', which provide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both cultural and social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migrant women's living conditions in transnational context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in the changes of the four European countries'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lthough all of them were in common to have the above debate. This paper suggests that what makes each country's policy changes somewhat different is the different ideological basis forming each country's public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KEY WORDS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페미니즘 feminism, 사회통합정책 social integration policies, 문화본질주의 cultural essentialism, 트랜스문화성 transculturality, 교차성 intersectionality

I 유럽 국가 내 ‘다문화주의 실패’ 논의 등장과 이민·사회통합정책의 수렴 현상의 대두

최근 대다수 유럽 국가 내에서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의 기조와 추진 방향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예전보다 더 선별적인 신규 이민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미 유입된 이민자들에게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 가치체계 및 규범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안팎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¹과 연동되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유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다문화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도 않았던 유럽 국가들이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Phillips 외 2008). 한편,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 논의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비판자나 반이민 옹호론자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차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전수 2012, 124-125). 이러한 입장은 실제 유럽 국가들이 사회통합정책을 수정한다고 해도 수정된 정책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비해 이주민들의 입장 을 더 많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다문화주의정책 실패론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은 유럽의 국

1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 10. 6),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2011. 2. 5),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총리(2011. 2. 9), 토르보른 앤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2011. 2. 17) 등이 자국 및 유럽 내 다문화주의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가별 정책 이념 및 환경이 다른 만큼 그 특징을 먼저 이해한 후, 무슨 정책이 어떻게 수정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른 한편,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 논의가 동화주의에 대한 강조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보편적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입장이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수 이민자 집단의 문화·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여성 억압적인 소수 이민자 집단의 문화까지 보호받고 있다는 서구 여성주의적 입장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주의 실패’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 이러한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갈등은 여성의 베일착용이나 강제결혼과 같은 이슬람 국가의 일부 전통적 관행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이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폭력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 무슬림 여성의 보편적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서구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시각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에 대한 역풍과 함께 유럽 국가의 자문화중심주의 또는 우월주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인식이 유럽국들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의 변화에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서구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시각이 이민자 여성의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폭력적 성향의 민족 문화나 집단과 가정 내 가부장적 문화 문제로 단순히 귀결시킴으로써, 인종·계급·섹슈얼리티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 중첩되어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문경희

2011; Anthias 2012). 결과적으로 무슬림 이민자 여성의 몸과 권리 를 중심으로 촉발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갈등은 소수 이 민자 집단 내 여성의 불평등 문제를 민족 또는 종족 집단 간 문화 적 차이나, 여성과 남성 간 가부장적 젠더문화의 문제로 단순화해 서 보는 문화본질주의적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수 이민자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가부장적 젠더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유럽 주류사회의 여성과는 다른 이민자 여성의 다양한 삶의 조건(예를 들어 인종이나 계층)이 외 면당했다는 입장 또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곧 소 수 이민자 여성의 직면한 사회적 억압이나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들이 위치한 초국적 이주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최현덕 2010). 또한 출신국과 유입국 사회의 구조 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다중적인 사회적 정체성이 상호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가부장적 권력 동학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황영주 2013).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다문화주의 실패’ 담론이 확산된 유럽 국가 간에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 수렴 현상이 어떤 점에서 서로 유사하고 다 르게 나타났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유럽 국가에서 무슬 림 여성 이민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 논 쟁은 무엇이며, 그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셋째, 다문 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소수 이민자 여성의 경 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을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 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유럽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이

민·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근간을 가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비교적 접근은 유사한 경험과 논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일국의 이민·사회통합정책은 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적 기초에 영향을 받아 유사하지만 또한 다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유럽 내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국가라는 점, 더욱이 앞서 언급한 ‘다문화주의 실패’ 주장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공식화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주의 실패’ 담론의 국내외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²

유럽 대다수 국가는 최근 10여 년 동안 국적 및 이민에 관한 법 규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문경희 2012a). 각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선별적 이민자 수용 정책에 따라 엄격한 언어 테스트 및 잠정기간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신규 이민자의 유입을 양적·질적으로 통제하

2 이 글의 II절의 내용은 저자가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인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집필한 8장의 내용 일부를 토대로 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일단 유입된 이민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시민권 취득과 가족 재결합의 자격과 조건을 예전보다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이민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주요 초점은 대체로 언어 및 문화 교육 강화에 맞춰져 있으며, 이민자 자녀의 학교 교육 및 기술·고용 연계, 노동시장 기회 구조 확대 및 평등정책, 주거 및 도시개발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제정된 EU의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 이민통합정책 기본원칙 등을 중심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³

한편, 유럽 국가들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어가고는 있지만 그 정책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공공철학 및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가 다른 만큼 정책의 내용 및 발전 과정과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4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심의 다문화주의(liberal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가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로 설정된다(김남국 201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국의 사회통합정책

3 2000년대에 들어와서 EU는 동등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지침들을 제정하였다. 첫째는 인종과 에스니시티와 관련이 있는 반인종차별지침(2000. 6. 29), 둘째는 범주지침(2000. 11. 27)으로, 이 지침은 종교 및 세계관, 장애, 연령과 성적 동일성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 2003. 12. 2까지 전환적용되어야 하며, 연령에 관해서는 2006. 12. 2까지 전환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는 동등처우지침(2000. 11. 27)으로, 이는 남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직업 영역 이외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지위지침(2004. 12. 13)이 제정되었다(신옥주 외 2009).

은 국가 중립성과 최소주의 원칙에 기반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영국의 사회통합정책이 다문화주의 이념을 반영했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애초에 그 대상은 일반 이민자를 제외한 난민만이 포함되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인종차별방지 법제도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1965년에 제정된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이민자가 고용, 주거, 교육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왔다(최동주 2009, 14). 이러한 인종관계법은 2010년에 다수의 개별법으로 존재한 반차별 관련 법률과 함께 통합되었다(신지원 외 2010, 25-26).

또한 영국에서 구체적인 사회통합의 주체는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실제 일상의 다문화적 만남과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차원의 기구나 조직이며, 이들이 곧 이민자 사회통합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개입 최소주의 원칙을 지켜왔던 영국 정부는 1997년 이후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민자들, 특히 신규로 유입되는 1세대 이민자들에게 영국식 동화를 요구하는 ‘자율적 강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Saggar 외 2012, 11). 당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사회통합정책은 주로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영국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책적 지원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2010년에 자유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기금을 삭감하고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정부는 사회통합정책보다는 일반 정책의 수정을 통해 이민자와 소외계층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aggar 외 2012, 14-15). 이는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분포된 결과 영국의 복지정책의 수혜를 더욱 집중적으로 받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 중심으로 저임금 가정의 이민자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영어교육 예산이 증가되는가 하면, 아동조기교육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속하는 이민자 아동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2009년에 개정된 국경·시민권·이민법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예전보다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전 잠정기간제 도입과 함께 잠정기간 중 공공서비스 혜택 제한, 영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경우 입국 전 영어시험 통과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 획득 자격이 1) 경제 이민자(고등기술자 및 경제적 공헌도가 높은 자) 2) 가족 재결합 3) 난민으로 단순화되었다(Home Office UK Border Agency 2012).⁴

4 한편, 2011년 10월 10일에 발표된 이민법 개정안은 EU 이외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거주의무 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는 내용과 함께, 가족이 최소한 1년에 2만 파운드 이상 벌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유예기간은 2003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011년 개정안에는 이를 3~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복지예산에 짐이 되는 비 EU계 가족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염운옥 2012, 118). 뿐만 아니라 2013년 현재 영국 정부는 불법 이주자를 차단하고, 신규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에는 불법 입국자의 운전면허 취득 금지, 집주인의 외국인 세입자 입국비자 확인의무 부여, 불법입국자 고용 기

공화주의적 시민 동화주의를 사회통합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 이해가 핵심 쟁점이다(김남국 2010, 154). 프랑스는 특정 에스니시티(ethnicity)가 중심이 되는 에스닉(ethnic) 공동체라기보다는 프랑스 대혁명이 표방한 자유, 평등, 박애, 애국주의, 세속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모든 개인들을 자발적인 ‘정치적’ 공동체로 간주한다(엄한진 2009, 51). 이런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프랑스는 혈통이나 문화의 동질성과 단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국민주의가 아닌 공화주의적 국민주의를 추구해왔다(이산호 2008, 14). 또한 국가에 대한 개개인의 관계, 즉 ‘시민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바 사회통합은 전적으로 개인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믿음이다. 그 결과 소수 이민 집단의 진홍 또는 문화적 다양성의 진홍은 사회통합정책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프랑스에서 공동체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허영식 외 2012). 이 때문에 국가는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사회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현 이민정책의 특징은 크게 통제와 통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07년에 개정된 프랑스 이민법에 반영되었는데, 신규 이민 통제와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그리고 망명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이 추가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업에 대한 과징금 인상, 이주민의 복지서비스 제한, 외국인 범죄자의 추방조치 강화, 영국 가족방문 비자와 관련된 모든 항소 권리 전면 폐지 등이 포함된다(UK Parliament 2013).

1) 가족의 재결합 요건 강화, 2) 영접 및 동화 약정 확대, 3)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들에 관한 규정 개정, 4) 거주증 규정 개정, 5) 망명 규정개정⁵이다(한국법제연구원 2009). 가족의 재결합 요건 강화와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들에 관한 규정 개정의 경우 프랑스 유입 전 자신의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청인은 프랑스의 언어와 국적 가치에 관한 기본 지식을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은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고정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거주증 규정 개정의 경우에는 10년짜리 장기거주증이 무료된 경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기한이 없는 영구 장기 거주증, 즉 영주외국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망명 규정의 경우에는 망명요청 거부 결정에 대해 잠정적 효력정지를 수반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은 크게 신규 이민자, 이민자의 자녀, 프랑스 사회 등 세 가지 대상을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다(주프랑스한국대사관 2012). 먼저 신규 이민자 정책은 무료이지만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 이에는 1) 프랑스 국가 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한 교육, 2) 이민자의 사회적 역량 평가(직업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 3) 가족 결

5 캐나다 퀘벡 모델을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이민자와는 계약(Contrat d'accueil et integration, CAI)을 체결한다. 동 계약은 2년간 유효하다.

합에 따른 이민 4) 건강검진 5) 언어교육(총 교육 시간 400시간), 6) 민법 교육 실시(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연간 7,000만 유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는 크게 중요한 두 측면이 있다. 첫째가 문화 다양성 인정이고, 둘째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인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존중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이민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식민주의 및 노예제도와 같이 사회적 논쟁이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속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문화 인정 정책으로 파리 도심에 아랍 문화관을 건립하고, 전국에 수많은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이산호 2008, 21-22).

독일의 경우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는 보수적 차별배제주의, 혈통주의, 속지주의, 연방주의로 볼 수 있다(Diane Sainsbury 2006).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그동안 독일은 이민자를 ‘손님’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복지 혜택, 국적, 선거권 부여 등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전개해왔다. 한편, 교육 및 귀화 정책 등은 연방주의 소관이며, 프랑스같이 단일한 국가 단위의 시민을 양성하지 않는다. 한편, 1990년대 후반까지 이민국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독일은 2000년 이후 이민국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이민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신지원 외 2010, 55). 소규모의 ‘초청노동자’를 수용했던 독일에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 유럽, 터키 및 제3세계로부터 정치적 망명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독일 거주 외국인은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8.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민법을 개정한 독일의 이민정책은 유럽연합 이민통합정책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05년에 개정된 이민법 시행 이후 현재 독일 사회통합정책의 원칙은 ‘지원과 요구’로, 이민자는 독일어의 습득과 민주주의 등 독일의 기본가치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독일사회는 이민자가 사회, 경제, 정치에서의 기회균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부각된 국가 차원의 통합 조치는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통합 코스 개설이다. 초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각 주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하며,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독일 안내서’를 독일어와 이주민 모국어로 발간, 배포하고 강좌 개설과 단체 소풍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주민의 모국어로 공공교통시설 이용, 공공기관 이용, 주택임대, 재정적 지원, 학교와 직업 소개 등의 정보와 함께 독일의 정치, 사회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통합교육은 총 660시간 과정으로, 600시간은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300시간의 재교육이 가능하다. 사회교육은 기존 45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는 독일의 법질서, 역사, 연방설립과 유럽통합, 동서독 통일, 독일 이민사와 지역사, 독일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 이

6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5만 9천 강좌(1,400개 제공 기관)에 약 50만 명(476,921)이 이수했고, 연방정부는 약 12억 유로(1조 5천억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정책은 입국 후 초기 지원, 특히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입국 초기 시 자녀부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박명선 2007, 285).

와 함께, 2007년에 출범한 기민당-사민당 연립정부는 기존 '통합 코스'를 개선한 국가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을 발표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활용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⁷ 이 국가통합계획은 현재 독일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환학 외 2012, 8).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민주의적 보편적 평등주의를 이념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스웨덴 정부는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은 이민자의 경우에 내국인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 및 혜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이민자 주류화를 이뤄내고자 노력한다. 스웨덴은 1975년부터 헌법 수정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투표권과 함께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2001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이민자의 이 중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스웨덴으로 귀화한 이민자가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한 귀화를 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그들의 스웨덴 거주 여부만 증명할 수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Westin 2006). 또한 2010년 4월 15일에 이민자의 가족 재결합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소개되었다. 이에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조건이 명시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자는 가족을 수용할 적절한 거주지와

7 대표적으로 독일어 교육 강화, 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 강화,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회 균등 제고, 지역 자원 및 문화, 스포츠, 매스미디어를 통한 통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민적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을 통한 통합과 국제연대를 강조한 과학의 발전까지 포괄적인 통합안이 준비되었다.

부양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난민이나 아동이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1).⁸

한편, 2009년 1월에 발표된 신차별방지법은 기존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동등기회법 및 차별에 관한 여섯 개의 시민법을 대체하도록 고안되었다(이현아 2012). 또한 기존 4개로 나뉘어 운영되었던 옴부즈맨을 ‘평등 옴부즈맨’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가을에는 신규이주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배제에 대항한 권한 부여: 정부의 통합정책”에서 정해진 7개 영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법정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사회통합 전략 7개 영역에는 1) 신규 도착자를 위한 빠른 안내, 2)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가, 3) 학교에서의 더 좋은 결과와 더 큰 평등, 4) 더 나은 언어기술 및 더 많은 성인교육 기회, 5) 효과적인 반차별 수단, 6) 낙후되어 있는 도시지역 개발, 7) 다양성 증대로 특정지어지는 사회에서 공동의 기본 가치가 포함된다. 현 스웨덴 정부는 위 7개 영역의 세부 정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중앙, 지방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결속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국가는 모두 상이한 이념적 기초 아래 사회통합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하고 있다.

8 2010년 7월 1일에 개정된 법은 아동의 가족 재결합의 경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지낼 때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가족 재결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한편 최근에는 EU의 인종 및 성평등 지침과 이민통합정책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은 평등 및 차별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선별적 유입 및 그들과 기존 이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추구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네 국가 이민자 통합정책의 차이점은 여전한데, 이는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⁹에 따른 평가로도 알 수 있다. 2011년에 발간된 MIPEX에 따르면, 31개국 중에 스웨덴이 1위(83%), 독일, 영국이 공동 12위(각 57%), 프랑스가 15위(51%)를 차지했다(Huddleston 외 2011).¹⁰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정책을 통한 이민자 주류화 접근 방식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이동성 영역에서 100%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민자의 정치참여 영역에서는 최하위점인 75%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영국,¹¹ 프랑스,¹² 독일¹³ 이민자의 정치참

9 브뤼셀 영국문화원, 외국정책센터, 유럽 이민정책 그룹은 유럽연합후원기금으로 개발한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를 매해 발표하고 있다. 2011년에 발간된 MIPEX에는 각 31개국(25개 EU회원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148개 정책 지표가 7개 정책 영역에 따라 평가되었음. 7개 정책영역에는 ① 노동시장 이동성, ② 가족 재결합, ③ 교육, ④ 영주권, ⑤ 국적취득 가능성, ⑥ 반차별법, ⑦ 정치참여가 포함된다.

10 점수 기준: 우호적인(favourable) 정도에 따라, 0%(매우 비우호적인), 1~20%(비우호적인), 21~40%(조금 비우호적인), 41~59%(우호와 비우호 경계 정도), 60~79%(조금 우호적인), 80~100%(우호적인).

11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통합된 반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차별금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단기체류 위주의 선별적 이민자 유입 정책에 따라 영주권 영역에서 최하점인 31%를 기록했다.

여 점수보다 높은 점수이다. 결과적으로, 사민주의적 보편적 평등 주의에 기초한 공공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스웨덴의 이민자들은 자 유주의 심의 다문화주의 성향을 띠는 영국, 공화주의적 시민 동화 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와 보수적 차별배제주의 입장을 띠는 독일의 이민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와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개별 국가의 사회통합지표를 놓고 보았을 때, 이민법이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이민자 유입이나 미등록 이민자의 체류를 더욱 까다롭게 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도자들이 각국의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인 2007년과 이후인 2011년의 MIPEX 총점을 비교해보면, 각국의 사회통합 수준이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하였다.¹⁴ 또한 위 세 국가의 2007

- 12 프랑스의 경우에는, 4개국 중에 이민자 통합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EU 전체 평균보다 1%가 낮았다. 최상위 점수를 받은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으로 2005년에 설치된 ‘차별금지와 평등증진을 위한 고위기구(HALDE)’가 차별 방지 노력이 효과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영역은 교육이다. 그 이유로는 이민자녀 중 저개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학교 진학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한 맞춤식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보다는 포괄적인 통합 및 동화 교육을 제공하기 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 13 독일의 경우에는, 2007년에 발표된 국가통합계획하에 이민자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결과 노동시장 이동성이 최상위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민자 자녀가 모국에서 취득한 교육 연수를 독일 학교의 학년 배정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이민자 자녀의 수요에 맞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교육 영역 점수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 14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영국과 독일의 MIPEX 총점은 2% 상승했고, 프랑스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년과 2011년의 MIPEX 비교는 위 세 국가에서 장기 체류 및 가족 결합 등 이민법(신규 이민자 유입 및 영주 허가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점수가 낮아졌지만, 이미 유입된 이민자와 관련된 노동시장 접근성, 특히 차별금지 항목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유럽 국가 내 이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유입된 이민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 소개된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통합 현상이 얼마나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것인가는 따로 살펴봐야겠지만, MIPEX 가 각국의 다문화 인프라를 보여주는 척도로도 이해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근 국내 반다문화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의 사회통합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¹⁵ 다음 절에서는 무슬림 여성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와 서구 보편적 여성주의 간의 논쟁에 관해 살펴보겠다.

III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논쟁: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 갈등적 시각과 대안적 관점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위 네 국가에서도 무슬림 이민자

15 2013년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36개국 MIPEX 비교에서 한국은 총점 60점으로 전체 13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한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MIPEX 지수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 위상'(윤광일 외 2013) 연구 참조.

들이 사회통합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실제 이들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무슬림 이민자 공동체에 의한 사회적 갈등 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며 다문화주의 위기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담론은 9·11 테러 및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마드리드 폭탄 사건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무슬림 집중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로 인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경계, 특히 무슬림 남성에 대한 공포에 초점이 맞춰져 확산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이 유럽 국가의 중요한 정책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무슬림 남성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폭력적 문화와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연계되면서, 유럽 각 국가 내에 이민법 및 국적 법의 선별·통제 기능 강화 및 사회통합정책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각 국가의 극우파 또는 보수 정치 인과 언론에 정쟁거리를 제공했으며, ‘반이민’, ‘반무슬림’ 담론이 심각한 정치·선거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문경희 2011).

한편, 유럽사회에서 무슬림 이민자 남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즉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배일착용, 할례 및 강제결혼, 명예살인 등이 바로 무슬림 남성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때 이슬람교 및 가부장적 젠더문화가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성의 근원이라는 점과 나아가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이민국 주류사회의 젠더 평등 문화에 위배 된다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세속주의와 젠더평등이 유럽의 고유한 가치·문화 체계로 자

리 잡고 있고, 이 때문에 유럽 여성의 권리가 잘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는 여성 혐오적인 가치·문화 체계로 인해 여성의 의복 및 결혼 등 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젠더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또한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와 이슬람 국가 를 세속과 비세속, 젠더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이항적인 대립의 관 계로 간주하고, 무슬림 여성들의 의복 및 결혼 관행을 이슬람교에 내재된 문화의 문제나 무슬림 남성의 ‘여성 혐오성’에 기인한 폭력 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유럽 내 정치 지도자와 대중들에게 널리 수 용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무슬림 여성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은 유럽 내 무슬림 소수 이민자 집단 내 문화 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베일의 경우 서구 이민국가 내 무슬림 이민자의 문화적(인종적, 종교적) 정체성의 ‘깃발’이자, 공동체 내 젠더 위계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체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서구 인의 눈에 ‘이슬람 문제’를 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베일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슬람권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온갖 억압과 부정적 이미지로 상징화되었다.¹⁶ 반면 유럽 내 무슬림 여성 이민자들은 자신의 안전, 종교적 경건 함, 정숙의 표시, 패션 등 다양한 이유로 베일을 착용하고 있는 것

16 일반적으로, 이슬람 관점에서 여성의 베일착용은 이슬람을 지킨다는 종교적 의미,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다는 정치적 의미, 가족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사회적 의미, 성적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서구 식민 경험 을 한 국가 내에서는 베일착용이 종교적 정체성의 구현의 상징이자 저항의 도구 로 사용되기도 했다(황병하 2010, 61).

으로 알려진다(염운옥 2010). 특히 최근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 혐오 정서가 높아지면서,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베일착용을 통해 무슬림 공동체적 정체성에 귀속함으로써 안정감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문경희 2012b).

종종 중매결혼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강제결혼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 넓은 의미에서 강제결혼은 “결혼하는 배우자들 자신이 혼인을 성립시키는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혼인을 일컫는 상위 개념이다. 중매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전통적 결혼, 조혼, 노예결혼, 아동결혼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전복희 2012, 155). 이슬람 사회에서 혼인은 남녀에게 유일하게 적합한 생활 행태로서, 부모가 자녀를 명예롭게 결혼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특히 딸들이 학교나 밖에서 연애하는 가족사의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일찍 결혼시킨다. 강제결혼과 중매결혼 사이에는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가 있는데, 서구에서는 대체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중매결혼에 반해, 부모나 가족의 강요나 살해, 혹은 폭력의 위협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강제결혼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 국가 내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 관행과 관련된 논쟁은 주로 그러한 관행의 근원에 관한 문제, 또한 그 관행이 여성 억압적인가의 여부,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여성의 자발적 선택인가 강제에 의한 선택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을 이슬람의 특수한 문화 또는 종교적 관행으로 보는 관점, 둘째,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을 가부장적 구조에

따른 여성의 의복 선택권과 결혼 선택권, 즉 여성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관점, 셋째, 사회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등 이민자 여성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 방식이다. 첫째 논의가 주로 다문화주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둘째 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서구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셋째는 위 두 관점에 대한 제3세계 여성주의 및 여성 행위주체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첫째 관점의 시각은 유럽 국가들이 실제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했다는 인식하에, 자국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주류문화와 가치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주의정책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원칙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슬림 여성이 종교적인 이유나 무슬림이라는 정체성 유지 등과 같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베일을 착용하기 원한다면 이민 유입국은 그들의 종교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이슬람 전통을 따르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여성이 부모님이 구한 남성과 명예롭게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여성의 권리 실천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문화주의 시각에는 가족이나 집단의 강압이나 폭력, 살해 위협에 의해 무슬림 여성이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을 따르게 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의 다문화주의 옹호론자인 킴리카(Will Kymlicka)는 영국에 관한 논문에서 소수 이민자 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강제결혼이나 남녀분리교육과 같은 무슬림 성차별적 전통은 현행 영국법에 저촉된다고 언급하며, 여

성 억압적인 문화 관행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염운옥 2012, 107). 이러한 김리카의 주장은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소수문화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여성에게 해로운 문화적 관행까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여성인권 옹호론자들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평을 받았으나, 다른 한편에서 그의 입장이 무슬림에 대한 “무지에서 유래한 편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대표적으로, 머두드(Tariq Modood)는 베일착용과 마찬가지로 중매결혼은 무슬림만의 관습이 아니며, 결혼을 ‘주선하는 일(arrangement)’은 다양한 차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성 억압적인 것은 아니라며 김리카의 의견에 반박했다(염운옥 2012, 107-108). 나아가 그는 “무슬림과 여성주의 사이에는 젠더 평등과 여성의 권리 옹호,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염운옥 2012, 107) 무슬림이 여성 억압적이라는 편견 때문에 무슬림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적은 다문화주의 시각이 특정 집단의 문화를 ‘동질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으로 파악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전제하고 있는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동의와 자발적 선택, 강제성의 개념이 또 다른 논쟁 지점으로 대두되었다. 즉 이는 다문화주의가 상정하는 것과 같이 과연 무슬림 여성이 베일착용과 가족이 주선한 결혼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무슬림 여성 이민자가 베일

착용과 강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기보다 모국의 이슬람 가부장주의와 이민국의 인종주의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절충’, 즉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선택하는 ‘자발적인 강제’에 가깝다는 입장을 가진다(Ho 2007; Hussein 2007, 14) 서구 국가 내 무슬림 여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조사를 토대로 한 이러한 입장은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가족과 공동체의 강제에 의해 베일을 착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더 많은 개인적 자율성(교육, 직장, 관계 선택권 및 외출 허용 등)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베일 착용을 하고 싶어도 유입국 사회의 차별이나 폭력이 두려워 선별적인 장소에서만 베일 착용을 하는 ‘절충’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베일을 착용하기로 한 ‘절충’ 안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이며, 이러한 ‘자발적 강제’와 ‘절충’에 대한 설명은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을 이슬람 문화나 종교를 토대로 한 가부장적 구조 아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보편적 인권 침해로 보는 관점은 주로 유럽 국가 내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관점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유주의 다문화주의는 여성에게 해로운 문화적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키티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수문화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한 문화까지도 문화권의 개념으로 옹호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퀴과 같은 여성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가부장적인 다수문화 속에 더 가부장적인 소수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소수문화집단의 여성을 성차별이 덜한 주류

문화에 통합시키거나, 소수문화집단을 더욱 젠더 평등적인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Okin 1999). 공적 영역에서 가시적인 베일착용과는 달리 강제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이 문화적 배경에 근거를 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은 자살이나 살인,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신문 사회면에 소개되지 않는 한 공적인 장에 알려지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젊은 여성은 희생자가 되고, 연장자 여성은 가부장제와 공모해 젠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체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문화 상대권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염운옥 2012, 102-103).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 공사이분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행정 규제가 적용되는 공적 영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구분하고 간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Young 2009, 292).

이러한 오킨의 주장은 다문화사회 내 소수 이민자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로서 서구 중심, 백인, 중산층 여성 중심적인 입장하에 ‘비서구 여성’, 즉 무슬림 여성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범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그의 주장 속에서 서구 여성은 합리적인 판단 아래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벗어난 존재로, 반대로 무슬림 여성은 자율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이원화되어 재현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비서구문화=열등문화, 가부장적 문화’, ‘비서구여성=가부장

적 억압의 ‘희생자’라는 문화 제국주의적 입장으로 해석되면서, 서구 자유주의 여성주의나 다문화주의 모두 서구와 비서구의 갈등 원인을 문화 차이로 인식하는 문화본질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우마 나라얀(Uma Narayan)의 경우에는 서구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자나 여성주의자들이 미국의 가정폭력은 기독교 문화 탓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인도의 지참금 살인은 ‘힌두 문화’, 이슬람 공동체의 명예살인은 ‘이슬람 문화’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화에 대해 명백히 비대칭적인 서구 중심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 한다(Narayan 1997, 85-86). 그는 이러한 서구의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주장은 콜로니얼 페미니즘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서구와 비서구 문화와 여성에 대한 이항대립적 시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서구 국가 내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선택이 가족과 공동체의 강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적 선택이고, 그 선택 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슬림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여성주의 법철학자 레티 볼프(Leti Volpp)는 문화본질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서구 보편적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이항대립적 갈등 관계로 파악할 때 ‘여성의 종속’을 특정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염운옥 2012, 105). 소수집단의 여성에 대한 억압을 문화의 문제로 보고, 또한 여성은 그러한 소수집단문화의 ‘희생자’로 보게 될 때 행위주체로서 여성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언급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항대립적 논리는 한 편이 옳고, 다른 편이 그르다는 선택을 하는 데 용이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서구 이민국 내 소수집단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폭력의 실상, 즉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억압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최현덕(2010)은 여성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는 여성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중요한 권력관계가 그들의 삶에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가지는 정주국의 주류사회와 이민자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위계질서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젠더적 위계질서이다(최현덕 2010, 275).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인데, 여성 이민자는 이 두 가지 축에서 모두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다문화주의와 보편적 여성주의 간에 내재된 문화본질주의적 시각이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벨쉬(Wolfgang Welsch)의 설명을 빌려서 문화본질주의가 가지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최현덕 2010, 276). 문화본질주의는 문화를 1) 사회적 동질성에 기초한 하나의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단위로 상정하고, 2)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에 속한 것으로서, 3)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과 구별되는 단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벤하비브(Benhabib 2002)가 지적했듯이, 최현덕은 문화를 위와 같이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이주민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재의미화 및 재해석 과정, 또한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경계

횡단의 문화적 과정과 상황을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최현덕은 벨쉬(Welsch)에 의해 주장된 새로운 인식틀인 ‘트랜스문화성(Transculturality)¹⁷’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벨쉬가 주장한 트랜스문화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최현덕 2010, 277).

“한 사회 내에도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상이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엉켜서 새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 차원, 즉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 즉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발견된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사선택하고 결합해가면서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벨쉬는 사회적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경계(빈부, 성별, 연령, 세대, 교육 정도, 출신 지역, 성적 지향성 등)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위 경계들이 불평등 및 차별, 배제의 축으로 작동할 때, 즉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것일 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벨쉬는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경계 및 여기에 각기 결부되어 있는 권력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

17 ‘translocality’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트랜스문화성’뿐 아니라 ‘문화횡단성’이라는 용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됨.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최현덕 2010, 278).

- 1)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지리적, 민족적 혹은 종족적 경계에 입각해 규정된 본질주의적 문화 개념의 해체.
- 2) 실체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맥락에 기초하여 그때그 때 작용하는 권력관계에 따라 새로이 설정되는 유동적 경계 개념을 내포할 것.

결론적으로, 최현덕은 벨쉬가 소개한 트랜스문화성에 따라 민족의 경계에 따라 문화를 규정하는 본질주의적 문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가부장적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문제는 더 이상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최현덕 2010, 279).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문화든 이민국 주류사회의 문화든 상관없이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된 위계질서가 발견된다면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부장적 질서의 문제는 어느 특정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역압적인 문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가부장제 권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자기 문화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남의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때문에 무슬림 이민자 여성의 베일착용이나 강제 결혼과 같은 관행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유럽사회에 존재

하는 가부장적 권력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서구와 비서구 여성을 문화에 따라 이항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간의 상이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상이성과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노력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교차성이라는 개념은 가부장제가 단순히 한 층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에 모두 내재되어 있어 다중적인 층위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때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연령, 장애 등 모든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모두 젠더화된 위계구조를 가지고, 이들 정체성은 연계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교차하는 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복합적인 불이익/불평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문경희 2011, 152-153; 황영주 2013, 170-171). 그러므로 이민자 여성의 치한 불평등은 단순히 가부장제하 젠더, 즉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계급, 국가, 문화, 섹슈얼리티와 같은 모든 상이한 정체성의 상호 교차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교차성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미국 여성학계에서 유색인종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대두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백인 중산계급 여성주의가 인종과 계급에 기인한 차별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주의 이론과 운동 내에서 흑인 여성의 경험이 비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김미덕 2011, 44). 또한 벨 훅스(Bell Hooks)는 “백인 중산계급 여성주의가 비판하는 가부장제는 백인

우월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제라는 공통의 억압을 설정한 (추상적) 여성의 연대는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진정한 연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미덕 2012, 45). 위와 같은 흑인 여성주의의 입장에 근거해 1980년대 말 흑인 여성주의 학자인 킴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는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크렌쇼의 교차성 이론은 백인 중산계급 여성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젠더 본질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권력, 억압, 특권의 복잡한 성격을 보여줬다는 점, 나아가 그룹 내부 및 사회그룹 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돋고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현실을 ‘분석’하는 인식의 틀과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 내 비서구 국가 출신의 여성학자나 여성운동단체는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 등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교차주의적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¹⁸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강제결혼의 경우 가부장제로 인한 명백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임과 동시에, 이민국 내 저소득과 빈곤, 실업, 낮은 교육 수준, 과도한 종교적 신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이지 특수한 소수집단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무슬림 여성 이민자가 경험하는 억압은 그들의 모국뿐 아니라 이주국인 유럽 국가 내에서도 그들의 삶의 조

18 인도의 여성주의 이론가 우마 나라얀(Uma Narayan)과 영국의 남아시아 여성운동단체인 사우스올블랙스터즈(Southall Black Sisters), 스웨덴의 무슬림 여성운동단체(소마야(Somaya), 테레펨(Terrafem))가 대표적이다.

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교차성 개념에 주목한다. 결국 이는 모국과 이민국에 상호 존재하는 가부장적 젠더관계와 함께 이민국 내 인종, 계층 차이로 인한 사회 구조적 위계관계가 상호 교차하며 이민 공동체 내 열등한 지위에 위치한 여성의 권리와 명예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차주의자들은 여성 이민자의 권리와 명예 보호와 향상은 모국뿐 아니라 이민국의 가부장적 젠더관계의 해체와 또한 이민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동등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인종적, 계층적, 문화적 권력관계가 해체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V 네 국가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에 대한 정책적 대응

트랜스문화성과 교차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같은 서구 자유주의 여성주의자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격 논리는 실제 유럽 내 정치 지도자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논의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위 네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무슬림 여성 이민자에 대한 유사한 담론이 확산되었지만, 그 정책 결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네 국가의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근간이 다르다는 점과 개인과 국가, 종교 다양성에 대한 입장, 나아가서 젠더평등에 대한 입장 차이 등에 기인한다. 다음은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베일착용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다.

표 1.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베일착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이념적 근거

국가	정책적 대응	이념적 근거
영국	허잡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학교 교복의 색깔과 동일하다면 착용 가능함. 니캅과 부르카의 경우에는 학습에 방해가 된다면 '효율성' 차원에서 금지함.	영국은 국교인 성공회와 비국교도 간 오랜 기간 갈등을 경험한 바, 국교와 타 종교에 대한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자유주의 심의 다문화주의, 실용적 문화주의 특징을 보여줌(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입는 옷에 대해 국가가 간섭할 수 없음.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정'이 가능함).
프랑스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종교적 의복도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으로 규정하였음 (2004년, '허잡법'으로 알려져 있음).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엄격히 지키는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이 반영됨. ¹⁹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세속주의 국가인 프랑스는 공적영역에서 어떤 인종, 문화, 종교적 정체성의 표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립성의 원칙을 보여 준 사례.
독일	허잡 착용의 경우, 최고법원이 허잡을 종교적 성징물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허잡법'을 제정하여 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	공식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속화된 국가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외성을 인정하는 '반(半) 라이시테' 국가로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의 의복이나 관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 '허잡법'은 주로 보수적 성향의 기사·기민연합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채택됨.
스웨덴	'허잡법' 없음. 무슬림 여성의 베일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스웨덴의 반차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스웨덴인에게 '보편적 평등'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키파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무슬림 여성도 베일을 착용할 수 있다는 논리임.

19 박단(2011)은 “무슬림 여성의 베일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라는 연구에서, 프랑스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엄격히 지키는 라이시테 국가로 공공 영역에서 어떠한 종교적 의복도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공식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속화된 국가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외성을 인정하는 ‘반(半)라이시테’ 국가로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의 의복이나 관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표 5-1>에서 나타나듯이, 무슬림 여성의 베일착용에 대한 각 국가의 제도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일착용을 전면 금지한 프랑스의 경우,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베일착용 금지를 계기로 다른 종교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의복이나 액세서리 등을 통해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무슬림의 복장관행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생활 속에서 내재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베일착용 금지는 종교차별 논쟁으로 불거져 무슬림과 비무슬림 프랑스인 간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심의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이나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실용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베일착용이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에 따라 베일착용 여부가 결정되는가 하면, 이민자에게 가장 개방적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보편적 평등 원칙에 따라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의복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는 네 국가 모두 민법 또는 형법 차원에서 강제결혼을 금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형법 적용을 통해 강제결혼을 엄격히 범죄화하는 경우(스웨덴)가 있고, 민법을 통해 강제결혼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 집중하는 국가도 있다. 이들 네 국가가 전개하는 강제결혼 금지를 위한 공통적인 정책적 노력은 합법적인 결혼연령보다 어린 여성이 부모의 강제에 의해 조혼하는 관행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세 국가는 유럽계와 비유럽계 이민자의 차등 없이 국제 결혼연령을

표 2.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강제결혼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국가	제도	내용
영국	2007년 강제결혼방지법 도입	희생자가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의의가 있음. 과거 법안에서는 '위협'을 맹백한 물리적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만을 인정했다면, 이 새로운 법안에는 "위협받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당면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됨. 형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정의됨. 결혼연령에 대한 이중적 제한: 영국 국내 및 EU 지역 출신 배우자들은 16세를 인정해주는 반면, 비유럽계 배우자는 최근 21세 까지 상향 조정(젠더 평등보다는 비유럽계 이민자의 이민 제한 기능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프랑스	프랑스 민법	결혼 전에 외국인 배우자 공식적인 면담 필수. 공식적 결혼연령: 18세. 강제결혼은 형법 위반으로 간주. 까다로운 결혼증명절차 도입을 통해 위장결혼, 강제결혼 등 방지.
독일	2007년 이민법 개정	18세 이하 이주민 배우자의 국내 유입 제한 이주민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강제결혼이나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의 체류권을 강화하지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음
스웨덴	2004년 결혼법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스웨덴 거주자의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함. 강제결혼을 시도한 경우 최고 2년까지 구형.

적용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비유럽계 이민자의 결혼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슬림계 신규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묵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V 문화본질주의에서 트랜스문화주의와 교차주의의 관점으로

이 글은 최근 초기 이민유입 단계에서부터 더욱 엄격해진 선별 기준을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미 유입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언

어 및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네 국가의 정책변화 환경과 담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초점을 맞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유럽 주류사회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이질적이라 고 간주되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인종적, 종교적 ‘타자’인 무슬림 이민자 공동체가 유럽사회에 구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서구 대 비서구’, ‘기독교 대 이슬람교’와 같은 이항대립적 정서와 접목되어 유럽사회 내 ‘다문화주의 위기’ 담론 확산의 근거가 되었다. 유럽사회 내 무슬림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무슬림 남성들의 반세속성, 가부장성에 기인한 폭력성이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무슬림 여성의 베일착용과 강제결혼이 무슬림 남성의 폭력성, 여성 혐오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으며, 이는 결국 무슬림 남성들이 유럽사회의 주류 가치인 세속성, 젠더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무슬림 남성의 여성 억압성과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의복 및 결혼에 관한 자결권의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보편적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이를 소수 공동체의 문화권 존중을 정당화하는 다문화주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위 네 국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비서구권 이민자 신규 유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기존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주의식 사회통합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

구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 위 네 국가는 한편에서는 선별적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초기 적응정책 강화와 이민자 전체에 대한 반차별법 및 복지, 교육, 고용 정책 강화 등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이 주목한 부분은 위 네 국가의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근간과 국가와 개인, 공동체 간의 관계 설정이 다른 만큼 정책 변화의 내용 또한 일정 부분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수 이민자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자유주의적 심의 다문화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단위의 획일적인 이민자 통합정책보다는 이슈와 사건에 따라 효율성과 실용성 원칙 아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동화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와 시민으로 규정된 개인 간의 계약 사이에 공동체의 가치나 문화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로 인해, 소수 이민자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이 국가가 규정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부정당한다. 혈통을 중심으로 한 차별배제주의의 원칙을 고수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최근 이민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민자에게 사회통합을 강제하는 반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이민자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는 연방주의의 원칙하 지역 주체들의 정치적, 종교적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평등원칙을 사회통합 이

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소수 이민자 공동체의 거주권이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되며,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네 국가에서 무슬림 여성 이민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젠더 평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근본적으로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문제를 모국의 전통문화 탓으로 보는 문화본질주의적 시각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즉 상호 갈등 관계에 있는 다문화주의자나 보편적 여성인권옹호론자 모두 무슬림 공동체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과 폭력을 모국의 전통적 문화의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두 관점 모두 무슬림 공동체의 문화를 비세속적, 젠더 불평등적이라고 간주한 반면, 유럽 국가의 고유 가치를 세속적이고 젠더 평등적인 문화로 이항대립적으로 설정해 위치시킴으로써, 결국 무슬림 공동체, 특히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화주의식 사회통합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한편, 위와 같이 문화를 불가변적인 민족의 경계로 설정해서 여성 이민자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억압을 모국의 전통문화 탓으로 간주하는 문화본질주의적 관점은 실제 모국과 이민국 사이에서 민족적 문화의 경계를 횡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 이민자의 삶의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트랜스문화성에 기반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이민자가 처한 불평등이 단순히 가부장적 젠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내재하고 있

는 인종, 계급, 국가, 문화와 같은 각각의 상이한 정체성의 교차로 인해 형성된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삶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본질주의 시각이나 가부장적 젠더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의 초국적, 트랜스문화적 위치성과 젠더위계화된 사회구조적 맥락의 상호 교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유럽 국가의 여성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각 국가의 공공철학 및 사회통합 원칙하에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변형 과정을 거치며 수렴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참고문헌

- 김남국. 2010.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 프랑스, 미국 비교 연구.” 『유럽연구』 28권 3호(겨울), 133-174.
- 김미덕. 2011. “정치학과 젠더: 사회분석 범주로서 젠더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45권 2호, 31-49.
- 김환학·오정은·최서리·한태희·이승복·박가영·신예진. 2012.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이민정책 연구총서 2. IOM 이민정책연구원.
- 문경희. 2011. “명예실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51권 2호, 135-159.
- _____. 2012a.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다문화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 유럽 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 평가 및 대안.”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제9장.
- _____. 2012b. “호주 무슬림 여성의 베일과 ‘호주성’ 논쟁: 문화적 인종주의 시각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1권 2호, 7-48.
- 박단. 2011.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과 ‘프랑스적 예외’로서의 라이시테.” 『대구사학』 102권 0호, 157-184.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권 2호, 271-304.
- 신옥주·석인선·홍기원·이종수. 2009.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제 연구 09-15, 한국법제연구원.
- 신지원·허준영·황선영. 201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영국,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0-01. IOM 이민정책연구원.
- 엄한진. 2009.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e-Journal Homo Migrans』 1집 1호, 47-74.
- 염운옥. 2010.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대구사학회』 101, 265-292.
- _____. 201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 영국의 ‘강제결혼’ 논쟁.” 『서양사론』 112권 0호, 97-125.
- 윤광일·전경우·홍성수. 2013. “MIPEX를 통해본 한국의 사회통합 위상.”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학술회의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의 별제문(2013. 6. 5.).
- 이산호. 2008.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연구』. 통권 제5호, 7-25.
- 이현아. 2012 “독일의 다문화(이민자 통합) 정책 현황.” 사회통합위원회.
- 전복희. 2012. “독일에서 이슬람 이주민의 강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통합정책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22권 2호, 153-169.
- 주프랑스한국대사관. 2012. “프랑스 정세”,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시

- 발언 요지) <http://fra.mofat.go.kr/korean/eu/fra/policy/situation/index.jsp>
- 최동주. 2009. “영국의 이민 관련 제도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2권 1호, 93-190.
- 최현덕. 2010.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 개념에 관하여: 여성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사회와 철학』* 20호, 259-284.
- 한건수. 2012. “다문화주의 한계와 대안 모색: 한국의 경험.” 대구기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제문.
- 한국법제연구원. 2009. “프랑스 이민법 개정”, *외국법제동향*.
- 허영식·정창화. 2012.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독사회과학논총』* 22권 1호, 71-98.
- 황병하. 2010. “이슬람의 시각으로 본 프랑스 히잡 논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권 1호, 87-118.
- 황영주. 2013.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불편한) 만남?: 영국에서의 강제결혼.” *『국제지역연구』* 17권 1호, 163-184.
- Anthias, Floya. 2012. “Transnational Mobilities, Migration Research and Intersectionality: Towards a transnational frame.”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Vol. 2, No. 2, 102-110.
- Benhabib, Seyla. 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1. “Migration Policy: Fact Sheet.” <http://www.government.se/sb/d/14074/a/167210>(검색일: 2012년 11월 29일)
- Ho, Christine. 2007. “Muslim women’s new defenders: Women’s rights, nationalism and Islamophobia in contemporary Australi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30, No. 4, 290-298.
- Home Office, UK Border Agency. 2012.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 (13 November),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newsarticles/2012/november/35-rules>(검색일: 2012년 11월 29일)
- Huddleston, Thomas. Niessen, Jan. Chaoimh, Eadaoin and White, Emilie. 2011.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III,” the British Council and Migration Policy Group. www.mipex.eu.
- Hussein, Susan. 2007. “The Limits of Force/Choice Discourses in Discussing Muslim Women’s Dress Codes.” *Transforming Cultures ejournal* Vol. 2, No. 1, 1-15.
- Narayan, Uma. 1997. *Dislocating Cultures: Identities, Traditions, and Third World Feminism(Thinking Gender)*. Routledge.
- Okin, Susan Moller.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In J. Cohen, M. Howard, and Martha C. Nussbaum (eds.),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hillips, Anne and Sawitri Saharso. 2008. "The Rights of Women and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Ethnicities* Vol. 8, No. 3, 291-301.
- Saggar, Shamit and Will Somerville. 2012. "Building a British Model of Integration in an Era of Immigration: Policy Lessons for Government."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A Project of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ainsbury, Diane. 2006. "Immigrants' Social Righ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lfare Regimes, Forms of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6, No. 3, 229-244.
- UK Parliament. 2013. "Queen's Speech 2013."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314/ldhansrd/text/130508-0001.htm#13050834000162>(검색일: 2013년 5월 30일)
- Westin, Charles. 2006. "Sweden: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ism."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usfocus/display.cfm?ID=406>(검색일: 2011년 3월 5일).
- Young, Iris Marion.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Emily Grabham, (eds.). *Intersectionality and Beyond: Law, power and the politics of location*. Routledge-Cavendish, 273-298.

필자 소개

문경희 Moon, Kyounghee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언어학 학사, 호주국립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 박사

논저 “호주 무슬림 여성의 배일과 ‘호주성’ 논쟁: 문화적 인종주의의 시각에서,” “International Women’s NGOs and Empower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Focusing on the GABRIELA Network from the Philippines,” “명예실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이메일 khmoon@changwon.ac.kr